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최 덕 재

나. 생 년 월 일: 1987.11.20.

다. 소 속: (주)태양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

2. 징계내용

가. 징 계 종 류: 견책

나. 효력발생일: 2024.11.19.

다. 사 유: 영업권 가치산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4년 10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